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단위:원)

의뱀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월별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301,430	38,560	0	0	
02월	232,920	30,160	0	0	
03월	232,920	30,160	0	0	
04월	258,320	33,470	0	0	
05월	258,320	33,420	0	0	
06월	436,760	56,320	0	0	
07월	204,740	26,510	0	0	
08월	204,740	26,510	0	0	
09월	204,740	26,510	0	0	
10월	204,740	26,510	0	0	
11월	204,740	26,510	0	0	
12월	204,740	26,510	0	0	
연말정산	0	0			
합계	2,949,110	381,150	0	0	
총합계				3,330,260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1-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고용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박형기	850702-1070013	

■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01월	59,130
02월	59,130
03월	59,130
04월	113,910
05월	60,210
06월	67,950
07월	51,970
08월	51,970
09월	51,970
10월	51,970
11월	51,970
12월	51,970
합계	731,280

- 1. 고지금액: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2.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3.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265,500	0
02월	265,500	0
03월	265,500	0
04월	265,500	0
05월	265,500	0
06월	265,500	0
07월	259,870	0
08월	259,870	0
09월	259,870	0
10월	259,870	0
11월	259,870	0
12월	259,87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접	0	
실업크리	0	
합계	3,152,220	0
	총합계	3,152,220

-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2.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반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					
보장성	202-81-45617		124S380621	10000	850702-*****	박형기	737,12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무배당 삼성화재 건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태평					
보장성	202-81-45	617	5200950881	10000	850702-*****	박형기	120,00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 보						
보장성	102-81-32035		L20096009	987	850702-*****	박형기	1,443,990		
	870525-*****	박순기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보장성	620-88-02	208	FA20240001343731		850702-*****	박형기	15,120		
	841216-*****	정기영	170823-*****	박상준					
	인별합계금액		2,316,23			2,316,23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허은숙	570123-2057416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류	사업자번	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				
보장성	102-81-32035		L02251578	3258	570123-*****	허은숙	557,940
	우정사업본부		요양보험				
보장성	101-83-02	925	70249942883		570123-*****	허은숙	405,60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 개인용				
보장성	102-81-32035		M2024122322700000		570123-*****	허은숙	22,87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하이카 다이렉트 개인용				
보장성	102-81-32035		M2024913495400000		570123-*****	허은숙	1,263,120
	인별합계금액		2,249,53		2,249,530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2. 공제 한도 : 100만원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18-83-0018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일반	382,900
113-10-48288	오렌즈안경원 (개봉점)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121,000
127-09-93618	보라매대학약국	일반	221,700
113-02-89585	아이마트 개봉점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 입비용	50,000
712-26-00063	미즈킨의원	일반	5,200
706-38-00116	메디컬8층약국	일반	8,900
516-92-01703	건강드림내과의원	일반	6,500
495-98-01427	다봄아산내과	일반	5,2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30,4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171,00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801,4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부양가족(700만원)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허은숙	570123-2057416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24-90-89511	차이비인후과	일반	7,800
118-83-0018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일반	369,500
127-09-93618	보라매대학약국	일반	115,660
124-92-48886	서울삼성내과	일반	1,700
124-92-52298	햇님한의원	일반	2,500
403-20-91877	유일약국	일반	6,830
107-82-03997	(의법) 건양의료재단	일반	63,800
124-29-40731	정마루약국	일반	4,200
107-20-25538	유아이씨시카고치과의원	일반	610,000
167-37-00158	마법의손의원	일반	1,700
321-03-00892	우리안약국	일반	29,400
579-59-00372	우정약국	일반	1,000
613-27-52790	서호온누리약국	일반	2,100
507-93-02423	매듭병원	일반	194,70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부양가족(700만원)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허은숙	570123-2057416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36-23-01587	이음약국	일반	64,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474,89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474,89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8-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부양가족(700만원)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상준	170823-3057019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117-09-81435	은혜온누리약국	일반	69,000
118-83-00186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일반	27,300
117-82-01074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일반	85,750
113-90-60417	임혜라소아과의원	일반	8,900
328-82-00068	의료법인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일반	92,800
203-40-51410	수태평양 약국	일반	9,800
677-92-01560	우리가족소아치과의원	일반	529,700
762-02-02565	아이사랑태평양약국	일반	4,770
431-08-02611	위드유이비인후과의원	일반	50,800
624-15-02147	대우약국	일반	3,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882,62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882,620

-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2.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자·6세 이하자·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부양가족(700만원)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 성크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 다모은보	850702-1070013	박형기	538,300
102-81-32035	L20096009987	850702-*****	박형기	330,300
인별합계금액				538,3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허은숙	570123-2057416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스 려그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무배당실손의료비보장보 험(계약	570123-2057416	허은숙	410,700
102-81-32035	L02251578258	570123-*****	허은숙	410,700
인별합계금액				410,7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상준	170823-3057019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단위:원)

상호	상품명	보험계약자		스 려그애 게
사업자번호	계약(증권)번호	수익자		수령금액 계
교보생명보험 (주)	더든든한(무)교보우리아이 보장보	841216-2806915	정기영	17,900
102-81-11097	217045012779	841216-*****	정기영	17,500
인별합계금액				17,900

1.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2024년 01~12월)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상준	170823-3057019	

■ 교육비 지출내역 (단위:원)

교육비구분	학교명	사업자번호	구분	지출금액계
유치원	서울고척초등학교	113-83-00274	일반교육비	1,050,000
일반교육비 합계금액				1,050,000
현장학습비 합계금액				0

- 1. 아이행복(사랑)카드: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 가능합니다.
- 2. 대학(원)교육비 : 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합니다.
- ※ 2017년 귀속부터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에 한함)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공제 한도: 근로자 본인·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연 300만원), 대학생(연 900만원),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1명당 연50만원), 현장학습비(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만원)

-1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28,511,394	31,109,541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0,711,809	107,380	184,000	106,352	31,109,541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5,323,484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19,210
신용카드	120-81-54231	롯데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38,000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일반	536,860
신용카드	214-81-37726	비씨카드 (주)	대중교통	0
신용카드	213-86-15419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752,09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23,099,375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전통시장	88,17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184,000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도서공연등	68,352
인별합계금액				31,109,541

- 1. 공제대상: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허은숙	570123-2057416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305,900	248,45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48,450	0	0	0	248,45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11-87-21455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일반	0
신용카드	104-86-56659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248,450
신용카드	101-86-61717	(주) KB국민카드	일반	0
인별합	계금액			248,45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 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250120-0102899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6-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739,380	774,28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48,100	0	726,180	0	774,28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루 종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201-81-68693	(주)국민은행	일반	0
직불카드 등	104-81-83559	주식회사 티머니	일반	48,100
직불카드 등	104-81-83559	주식회사 티머니	대중교통	726,180
인	별합계금액			774,28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한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박급
-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허은숙	570123-2057416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151,450	29,94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9,940	0	0	0	29,940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9-82-04731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	0
직불카드 등	202-81-48079	신한카드 주식회사	일반	29,940
인별합계금액				29,940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전년도, 당해년도 연사용금액 합계

(단위:원)

2023년 사용금액 합계	2024년 사용금액 합계
6,698,188	8,662,123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단위:원)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주택임차료 거래	합계금액
8,290,503	150,000	206,500	15,120	0	8,662,123

-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단위:원)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고레디사그에
		05월	06월	07월	08월	공제대상금액
		09월	10월	11월	12월	
	일반거래	622,334	630,210	690,170	743,720	
현금영수증		787,710	652,732	680,980	618,640	8,290,503
		904,420	602,120	715,185	642,282	
	전통시장거래	0	0	0	0	
현금영수증		0	0	0	0	150,000
		150,000	0	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거래	0	62,000	0	0	
		0	0	0	0	206,500
		0	0	21,100	123,400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등거 래	0	0	0	0	
		0	0	0	0	15,120
		0	15,120	0	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0-

-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2.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월세)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연금저축]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연금저축 납입내역 (단위:원)

상호	사업자번호	당해년도 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 포함)	당해년도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납입금액중 인출금액 포함)	순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계좌번호		ISA계좌만기 전환납입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인출금액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주)국민은행	201-81-68693	2,400,000	0	2,400,000	
09895834001848		0	0	0	
순납입금	금액 합계			2,400,000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납입액이 조회됩니다.

-21-

- 1.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 공제
- 2.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전환 신청 금액 포함)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3. 공제 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함)
- 4.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연간 납입액을 제출합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소득·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회기간 : 2024년 01 ~ 12월)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사업사인호)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주)국민은행 (201 81 (2003)	해당없음 (FOR YOU 장기대 출 (주택구입자금))	2020-05-11 2050-05-11	30년	2020-05-11	2020-05-11	3,912,300	3,912,300
(201-81-68693)		180,000,000	0	180,000,000	6,000,000		, ,

- 1.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2014.1.1.~2018.12.31. 4억원, 2019.1.1.~2023.12.31. 5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 ※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대상임
-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간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한도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기간 : 2024년 01~12월)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박형기	850702-1070013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체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101-82-14123	(재)희망제작소	종교단체외일반(지정)기부금	120,000	120,000	0
105-82-03569	사회복지법인 세이 브더칠드런코리아	종교단체외일반(지정)기부금	120,000	120,000	0
511-83-03311	상주시청	고향사랑기부금	30,000	30,000	0
인별합계금액					270,000

- ※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
- 1.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